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규중	5903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조규중	●●●●●●센터 소속 모집인 조규중은 2017.4.24.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2년 5월 6일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2022년 5월 6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